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9.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고시

가.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
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
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
되는 우편물

나. 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른 우편물의 구체적인 배달방법 및
적용기간 등

제4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 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
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
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
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배달하는 경우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
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

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제공하는 방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외의 우편수취함에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배달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 -----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u>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 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의 결정·고시</u>	24.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 <u>고시</u> 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u>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 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u> 나. 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u>따른 우편물의 구체적인 배달방법 및 적용기간 등</u>
24의2. (생략)	24의2. (현행과 같음)
25. ~ 27. (생략)	25. ~ 2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② (생략)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에
는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
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④ (생략)	<u>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외의 우편수취함에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배달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④ (현행과 같음)
---------------	---